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 월 말합

### p.71 (-) 비과세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자금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신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p.109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p.110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인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0.12.31.이전)	20세 이하 (*00.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제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50.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p.117 (-) 연금보험료공제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p.119 (-) 특별소득공제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총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p.135 (-) 그 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 ~ 1억 2천만원 해당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신사사용료, 대중교통이용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	x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0.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x	2000.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60.12.31. 이전 2000.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	○	○	
	위탁아동		○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0.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x	x	○	
	교육비	x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	x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지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2.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예정)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8:00~20:00)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 예정임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01 미리 알려주고**

- (10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공으로 절세계획 수립지원
- (다음해 1월)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 맞벌이 부부 절세 가이드

**02 채워주고(Pre-filled)**

- 신고서 수기작성 → 자동작성

**03 간편하게 제출(on-line)**

- 신고서·증명서류 문서로 제출 → 파일로 온라인 제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 제공
- (3개년 신고내역 제공 및 절세주머니)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 2018년 부터 근로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

### 연말정산시 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예 : 기부금 등)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 (맞춤형 도움말 제공) 연말정산 도움말 코너를 신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선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도모

###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20.10.30일 제공(1~9월 사용금액)
	절세 계획 수립 지원	절세Tip, 유의Tip, 3년간 세액 추이 등(11월부터 제공)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 계산의 편의 제공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모의계산 기능 제공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서비스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용 가능
	•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자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USB, 파일 다운로드 > 회사 프로그램 Up-load 공무원, 대기업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상이자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 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 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국세청	
교 육 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교육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국세청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상입)신청서	본인 작성		
월세액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 면 ·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 소득 ·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1. 연말정산 대상자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입금액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4. 종합소득 공제금액 (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비용공제)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6. 세율	6~42%	6~42%	6~42%
7.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소법 §122)〉

항목	구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포함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근로소득	○	○	
세액공제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p.108 참조)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